

[]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[]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0일	
기금법인	명칭	전화번호		
	주사무소 소재지			
대표자	성명(한글)	(한자)	생년월일	
	주소		직책	
기금법인 설립준비 위원회 위원	근로자측	성명	생년월일	직 책
	사용자측	성명	생년월일	직 책
분사무소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		
	소재지			
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		[] 에	[] 아니오	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52조제5항·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
[]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.
[]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○○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 1부 2.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(근로계약서 등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) 1부 3. 사내(공동)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4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대표자란에는 기금법인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을, 직책란, 근로자측란, 사용자측란의 직책란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직책을 적습니다.
-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 각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.
-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란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인지를 표시합니다.

처리절차

